

의안번호	제738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360회)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해 공채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, 도민의 공채 매입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(안 제8조 제2항)
 -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 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면 및 매입의무의 한시적 면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공채매입 면제) ② 다만,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하여는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.</p>	<p>제8조(공채매입 면제)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가목 2,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기준을 50% 감면하고,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 및 별표1의 제2호 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<생략>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“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